[별표3]

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처분내용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25의2. 운송사업자(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)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7	사업일부정지 (60일)	사업일부정지 (120일)	사업일부정지 (180일)
25의3. 운송사업자(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)가 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	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8	사업일부정지 (90일)	사업일부정지 (180일)	사업일부정지 (180일)

※ 변경전 (25의2, 25의3) : 1차 30일, 2차 60일, 3차 90일

[별표5]

위반내용	관계 법조문	위반 횟수	과징금의 액수
			전세버스
17의2. 운송사업자(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)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7	1차 2차 3차 이상	360 720 1,080
17의3. 운송사업자(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)가 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	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8	1차 2차 3차 이상	540 1,080 1,620

※ 변경전 (17의2, 17의3) : 1차 180, 2차 360, 3차 540

[별표6] 신설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더.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				
1)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94조제3항제4호	50	50	50
2) 1)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94조제3항제4호	10	10	10